

# 2024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 「사회통합전형」 계획

서울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 I 관계 법령 및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12조 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교육혁신과-6926, 2023. 5. 11.)

### II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기본 방침

- 영재교육기관은 모집정원의 **20%이내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우선 선발한다.
- 사회통합전형의 유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한다.
- 사회통합전형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심의 및 검증 절차를 준수한다.
-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의 60% 이내 우선선발하고,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충원한다.
-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 중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을 배려하는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절차를 준수한다.
- 입학이 결정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을 취소한다.

### ■ 전형 유형

전형	유형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sup>1)</sup>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사회다양성전형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sup>2)</sup> ,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 교원·공무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등

### ■ 전형 방법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이내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 단계별 전형 시 기준

-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 사회다양성 전형 중 다자녀가족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선발

1)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를 이하 ‘**보훈자 자녀**’ 라 한다.

2)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 전형별 순위 및 유형

전형	순위	유형	비고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이내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증빙서류 제출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 자녀	
		군인 자녀(중령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경감이하)	
		소방공무원의 자녀(소방경이하)	
		환경미화원의 자녀	

## ■ 심의·검증 절차 강화 및 부정 입학 확인 시 엄정 조치

- 지원자 소속 학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을 위한 심의 절차 준수
  -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 영재교육원: 증빙 서류 검증 및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 확인 시 합격 취소 등 조치

## 1. 기회균등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보훈자 자녀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의 증빙서류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소속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제3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차상 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한 자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개임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 증빙 서류 예시 】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 2. 사회다양성 전형

###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

## 2023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2023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2인	157,523	197,299 / 200,343	697,200
3인	229,312	255,791 / 261,015	1,073,040
4인	293,801	309,670 / 320,126	1,444,080
5인	354,030	359,887 / 379,133	1,801,200
6인	436,179	434,962 / 476,875	2,145,600
7인	481,248	476,875 / 521,613	2,483,520
8인	527,523	521,613 / 563,270	2,821,200
9인	570,140	563,270 / 625,329	3,158,880
10인	628,210	625,329 / 729,187	3,496,560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주의2 확인)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3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 주의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 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로서 자격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이 최근 1년 이내 변동이 있을 경우(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부 또는 모가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고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피부양자의 최근 1년간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 주의 2.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 지방세 부과된 지역 및 부과되지 않은 지역 증명서 각각 발급해야 함

## ◆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 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기타 가구원수 산정 및 사례는 '사회통합전형 Q&A' 참조

## ■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예시)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 부 또는 모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 ■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에도 친부·친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연간)을 모두 확인·합산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 ○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

-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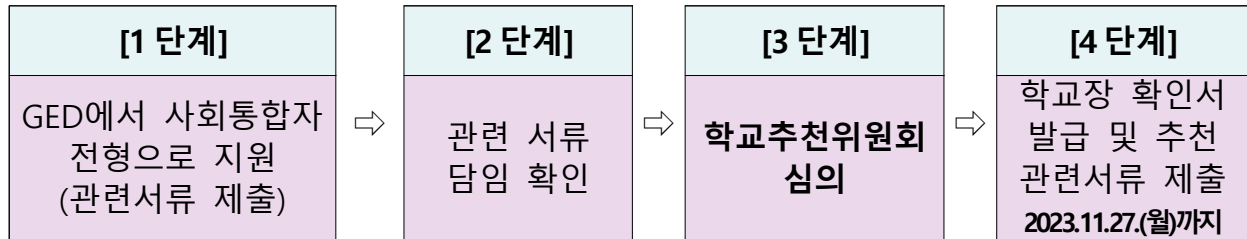
###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 ✦ 학교별 심의 및 검증 절차 준수
- ✦ 부정입학에 대한 엄정 조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된 경우 합격 취소 등 조치

## ■ 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 ○ 추천 절차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 단계] 심의 제외 가능

### ○ [1단계] 사회통합전형 지원신청서 제출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 서류 기입,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서식1]

### ○ [2단계] 관련 서류 담임 확인

- 담임 교사는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여부 확인

### ○ [3단계]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 (구성) 교감 포함하여 4~8명으로 구성(위원장은 교감,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 실무 총괄)
- (심의 사항) 사회통합전형자의 지원서 내용 및 증빙 서류의 적합성 여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 대상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및 심사 서류 내용 등은 철저히 보안에 유의

### ○ [4단계] 학교장 확인서 발급

- 학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 확인서 [서식2] 발급

### ○ 사회통합전형 서류는 학교에서 확인 후 해당 영재교육원(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영재교육원 운영학교, 과학전시관 등)으로 2023.11.27.(월)까지 직송



구분	대상자	지원 자격	
기회균등전형 60%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사회다양성전형 (가난준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자녀	1 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2 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li> <li>○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부' 또는 '모' 기준: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 '자녀(지원자)' 기준: 한부모가족</li> </ul>	구청,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신청서 [서식1]</li> <li>○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서식2]</li> </ul>	지원자 및 학교 작성	
기 회 관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홈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택1)	소속학교 (또는) 관할 보훈지청
		교육지원 대상자 외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정부24(홈페이지)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기준중위소득50% 이하 · 기준중위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 확인서	학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li> <li>-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li> <li>-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li> </ul>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 학교장 확인서 [서식2] 의 추천사유 란 작성	학교	

지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순직 군경·소방관·교원· 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없음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군인 자녀 (중령이하)	○ 15년 이상 재직 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찰(해양경찰) 자녀 (경감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이하)				

※ 증빙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은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  
여야 함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호</li> </ul>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li> </ul>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li> </ul>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제3호</li> </ul>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li> </ul>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li> </ul>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속학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확인서 제출 가능